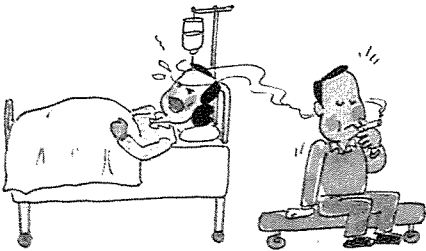


#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제도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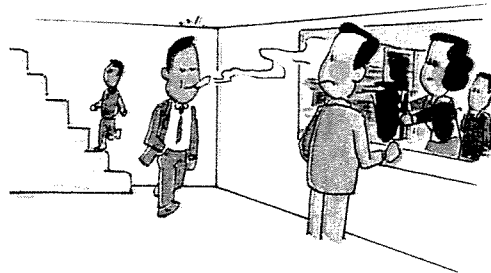
## ■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시설

-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(진료를 위한 대기실 포함)
- 사회복지시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(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보조시설 등은 제외)



-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

- 교통관련 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, 철도의 차량내부,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, 지하철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(승객 또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 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함)
-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



- 국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금연운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

-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(위반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
